

2011 계속 연말정산

글 | 김희영 세무사

1. 연말정산이란?

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,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니다.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데, 이것을 '연말정산'이라 합니다.

2. 201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

올해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.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,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총금액의 40%를 공제받을 수 있다.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.
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까다로워졌다.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. 총급여액의 20% 초과금액이던 공제 문적이 25%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. 공제비율은 20%이며, 직불카드(체크카드 포함)는 공제비율이 25%로 5% 높아졌다. 또 미용·성형·보약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빠진다.

3.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

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?

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(장인·시부모 포함)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(150만원) 가능합니다.

②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?

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③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 받을 수 있나요?

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(70세 이상)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.

④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,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?

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(12월 31일)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,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공제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은?

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1명일때는 적용되지 않고, 2명일 때 50만원,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.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.

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?

그렇습니다. 의료비를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⑦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,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⑧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?

공제대상이 아닙니다.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,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⑨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처남의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고,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⑩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.

⑪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?

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⑫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
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학원(체육시설)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,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⑬ 20세가 넘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?

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,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⑭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?

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,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.

⑮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요?

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. 또한,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 ❖

